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50 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최민희·노종면·정동영

김우영 · 서영교 · 한민수

김남근 • 박민규 • 김 현

이해민 · 이연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사회 운영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.

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 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.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 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,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,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·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- 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(散會) 일시
- 2. 안건
- 3.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
- 4.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
- 5. 표결 수
- 6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[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같다]하고,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

- 을 호선(互選)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 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(間印)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6조의2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
	등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
	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
	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 개최
	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
	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
	별로 심의・의결 결과를 기록
	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.
	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(散
	會) 일시
	<u>2. 안건</u>
	3.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
	의 발언 내용
	4.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
	<u>5. 표결 수</u>
	6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
	고 인정하는 사항
	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
	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
	수 있도록 서명[「전자서명
	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
	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
	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
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하고,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명을 호선(互選)하여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각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하거나 간인(間印)하게 할 수있다.

-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